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연번	성명	주소	반송사유	단속일	위반내용	과태료(원)
1	유○준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폐문부재	2025-01-13	금연구역에서 흡연(조례)	100,000
2	박○주	서울시 동작구 양녕로****	폐문부재	2025-01-08	금연구역에서 흡연(조례)	100,000
3	한○택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폐문부재	2025-01-07	금연구역에서 흡연(조례)	100,000
4	이○영	서울시 관악구 인현길****	폐문부재	2025-01-07	금연구역에서 흡연(조례)	100,000
5	김○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폐문부재	2025-01-06	금연구역에서 흡연(조례)	10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 - 533호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2014-222호(2014.06.1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22-261호(2022.06.16.), 관악구 고시 제2024-44호(2024.04.18.)로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된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5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인정을 위해 공람 기간 이내에 공람 장소【관악구청 주택과(6층) 및 조합 사무실】로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2025. 3. 7.~ 3. 21.(14일간)

나. 공람장소

- 1) 구청 주택과(☎ 02-879-6304)
- 2)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887-5510)

다. 사업시행계획

- 1) 사업의 종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사업의 명칭: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3)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80개월
- 4)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정비구역의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51번지 일대
 - 정비구역의 면적: 74,264.5㎡
-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윤승호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청림길 3, 2층(봉천동)

6) 건축계획

대지면적(m ²)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m ²)	층수(지상/지하)	주용도
54,826.5	23.28	270.82	281,264.32	27/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7)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라.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계 법령, 관계 부서협의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공고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통지되고, 미 수령자는 이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청 주택과(☎02-879-6304) 및 조합사무실(☎02-887-5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 2025-534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25. 3. 13. ~ 2025. 3. 28.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시·독촉분 고지서 (2025년 2월 수시·독촉 반송분)			
나 대 상 자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길 * 문*원 등 2,176건			
다 처분의 원인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위반			
라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과태료의 부과·징수)			
마 문 의 처	기관명	관악구청	담당 부서명	교통지도과(교통과정팀)
	주 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1570-1)		
	전화, 팩스	☎ 02-879-6980~6, FAX 02-879-7846		
	홈페이지	https://www.gwanak.go.kr/		

3.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4. 지정된 기한이 경과하여 과태료를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3%) 및 증가산금(매월 1.2% 60개월 동안)이 적용되오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과태료 독촉·체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이 압류됩니다).

6. 아울러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같은 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같은법 제55조에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제재가 있음을 안내합니다.